

보도시점 2024. 12. 1.(일) 11:00
12. 2.(월) 조간

배포 2024. 11. 29.(금) 16:00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꼼꼼한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 겨울철 농촌관광시설 화기이용, 난방 등에 따른 시설 안전 점검
- 소방화재 안전, 위생 등 관리 부적합 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는 12월2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화기이용, 난방 등에 대비하여 농촌관광시설의 안전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안전점검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의 농촌관광시설 3만 6천여 개소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하여 안전, 위생, 운영 형태 등을 확인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 및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에서 소방·안전, 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른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후 3개월 이내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국민들이 농촌관광시설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위생·안전 교육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관광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로서의 농촌관광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2025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점검 계획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고은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044-201-1590)



□ 추진배경

- 동절기 화기사용, 난방 등에 대비하여 농촌관광시설 시설 안전, 운영체계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 필요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8조 및 「도농교류법」 제7조

□ 점검기간: '24. 12. 2. ~ '25. 2. 14.

□ 점검대상: 농촌관광시설(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관광시설 운영현황('23년말) 및 점검대상 선정 우선순위]

구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마을	-	5	7	6	1	5	3	112	220	79	134	150	175	131	141	26	1,195
농원	1	10	22	-	1	3	1	212	154	59	111	35	96	101	115	53	974
민박	134	48	1,339	32	6	291	24	3,730	6,434	1,547	2,098	1,276	3,422	3,886	4,164	6,014	34,445
휴양단지	-	-	-	-	-	-	-	3	1	1	1	1	4	3	1	4	19

* 농어촌민박은 '24.9. 기준(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개방)

시설유형	점검 우선순위
농촌체험휴양마을	① 농촌관광등급 미부여 마을등급외 마을형 등, ②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규모 및 횟수 ③ 안전보험 미가입 마을, ④ 유기사설(수영장 등) 운영 여부
관광농원	①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② 착공 이후 현재까지 행정처분 이력(누적 횟수 등) ③ 유기사설(수영장 등), 낚시터 등 운영, ④ 캠핑장 및 실내 바비큐장 운영 규모
민박	①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②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채의 임대 사업장(동일단지, 연접) ③ 가연성 소재(목골텐트 등)가 활용된 바비큐장 운영 ④ 행정처분 이력(누적 횟수 등)
휴양단지	①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②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③ 유기사설 및 캠핑장 운영, ④ 최근 1년 내 운영자 변경 여부

* (공통점검 우선순위)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곳